

[서식 예] 계금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〇〇. 〇〇. 〇. 계금 5,000,000원, 50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100,000원 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낙찰계는 계주가 자기 책임 아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계원들은 서로간의 신용상태는 알지 못한 채 계주인



피고의 신용과 능력만 믿고 가입하였으며, 제1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 지 계원들이 1구좌당 금 100.000원씩을 계주에게 지급하고. 제2회부터는 계금을 타려고 하는 계원들이 금 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찰금액을 써넣고 그 중 최저금액을 써넣은 자로부터 차례로 높은 금액을 써넣은 계원의 낙찰금액의 합 계가 5.000.000원에 미달하면 모두 낙찰이 되는 것으로 하여 위 낙찰계는 반드 시 제50회에 이르러서야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낙찰 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100,000원씩 불입하여야 되며, 미낙찰계원은 당해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불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게 되어 있고, 계불입금과 계급부 금은 계주와 당해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으며 곗날에 계원들이 모이기는 하 나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특히 기낙찰자는 매월 금 100,000원씩의 불입 금을 낼 의무만 있을 뿐, 계모임에는 관심이 없으며 미낙찰계원 중에서도 당일 낙찰을 희망하는 계원 이외에는 그 날 계가 얼마에 낙찰되는가와 그에 따라 할 당되는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원 서로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계급부금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된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계금은 계주가 채워 넣어서 낙찰된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서 이를 주고, 받기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 2. 그런데 원고는 위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하여 9회째인 20○○. ○. ○.에 금 2,260,000원을, 15회째인 20○○. ○. ○.에 금 2,695,000원을 각 낙찰을 보아 각그 낙찰금을 지급 받았는데, 위 낙찰계는 20○○. ○.초부터 일부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잘 내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 ○. 제44회까지 겨우 운영을 해왔으나 그 간 계원들로부터 미수금된 계금이 금 19,200,000원이나 되어 위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 ○. ○.에 있은 제45회 계모임에서 위계가 수금이 안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파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석계원 중 피고를 제외한 참석자전원은 이에 반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입찰을 강행하여 그 중 금 4,125,000원으로 입찰을 본 원고를 낙찰자로 정하였습니다.
- 3.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한 지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낙찰계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인 피고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신용계업무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인 피고는 다른 계원의 계금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미낙찰계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일방적으로 계를 해산(속칭 파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인 피고가 파계를 선언하였다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월 5일 계를 개최하여 왔고 피고가 파계를 선언한 날에도 미낙찰계원들이 모인 가운데 낙찰절차를 행하였으며 더구나 피고가 참석하였으므로, 당일의 계모임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낙찰이 있은 후에 계주의 낙찰선언이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넣었는가를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주와 계원간의 계급납부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낙찰금 4,125,000원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불입금영수증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의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의 정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낙찰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은 후 계주의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넣었는가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간의계금납부관계가 성립되며, 계주의 형식적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볼 것은 아님(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